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본문중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을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 “경제공업 및 경영학자와 공업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4인이내”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4인이내”로 하며 제4호는 이를 삭제 한다

제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및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중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6조 본문중 “도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를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하고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도시과장”을 “지역계획과장”으로 “도시과”를 “지역계획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